

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

[소관 : 출원과]

제 정 2015. 6. 1. 특허청 고시 제2015- 7호
개 정 2017. 1. 13. 특허청 고시 제2017- 1호
개 정 2017. 9. 22. 특허청 고시 제2017-19호
개 정 2019. 9. 27. 특허청 고시 제2019-14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특허법시행규칙」 제11조의2, 「실용신안법시행규칙」 제17조, 「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」 제24조의2, 「상표법시행규칙」 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이 되는 서류)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.

1. 권리관계 변경신고서
2.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
3. 서류제출서
4. 정보제출서
5.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
6. 출원 취하·포기서

제3조(재검토기한) 특허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5-7호, 2015.6.1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7-1호, 2017.1.13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7-19호, 2017.9.22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9-14호, 2019. 9. 27.>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